

충청북도농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농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을 충청북도농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로 한다.

제1조중 "농촌주택사업특별회계(이하 "회계" 라 한다)를 설치하고 그자금의" 를 "그 자금의 조성과" 로 한다.

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삭제 한다.

제5조를 제3조로 하고, 동조제3항중 "농촌개량사업자금대여에 관한 협약" 을 "농촌주택 개량사업자금대여에 관한 협약" 으로 하며, 제4항을 삭제 한다.

제6조를 제4조로 한다.

제7조를 제5조로 하고 동조제3항중 "년리 8.0%" 를 "년리 6.5%" 로 한다.

제8조 및 제9조 를 각각 삭제 한다.

제10조를 제6조로 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이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소관 수입.세출에 이입 한다.